



○ 귀국이 곤란한 분에 대한 재류 제반신청 취급

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에 의하여 귀국편 확보 또는 본국 국내 거주지로 귀환이 어렵다고 판정되는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함.

① 「단기체재」로 재류중인 분

⇒ 「단기체재(30일)」의 재류기간 갱신을 허가 한다.

② 「기능실습」또는「특정활동(외국인 건설 취업자 또는 외국인 조선업 취업자)」으로 재류중이면서 종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받아들인 기관 및 그 업무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

⇒ 「특정활동(30일・취업 가능)」의 재류자격 변경을 허가 한다.

③ 기타 재류자격으로 재류중 인 분(상기 ②에 해당되며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분 을 포함)

⇒ 「단기체재(30일)」의 재류자격 변경을 허가 한다.

※ 상기 ①~③에 대해서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음.

○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취급

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상륙 제한 조치 대상자에 대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하와 같이 조치함.

① 이미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행하고 있을 경우

⇒ 심사를 보류함.

② 신청중인 안건에 대해서 활동개시 시기의 변경희망이 제시된 경우

⇒ 받아들이는 기관의 작성이유서 만을 제출받아 심사함.

③ 재입국 출국 중에 재류기간을 경과한 분 등 새로이 재류자격 인정증명 교부 신청이 거행된 경우.

⇒ 신청서 및 받아들이는 기관의 작성이유서 만을 제출받아 심사함.